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23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1일

발 의 자 : 김 경 의원(1명)

찬 성 자 : 권수정,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성흠제, 송아량, 양민규,  
이영실, 이정인,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황규복 의원(23  
명)

## 1. 제안이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17년 11월 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 경찰, 소방, 재난상황실의 협조를 통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실시간으로 공동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설립 근거가 관련 조례에 담겨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CCTV 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해왔음.

이에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서울특별시 CCTV 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 법적근거를 두고, 기존 조례에 탈락한 자구와 법령을 잘못 인용한 부분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를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식별할”을 “알아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25조 제1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유사한”을 “비슷한”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5조 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9조 중 “영상정보처리기에”를 “영상정보처리기기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통합관제센터)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통합 및 실시간 영상 관제
2. 유관 기관과의 합동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화된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신속한 대응 및 비상대응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CCTV의 임의조작 방지, 영상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처리기기나 그 밖의 장비의 연계를 위한 표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이미 구축·운영되는 통합관제센터는 이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된 통합관제센터로 본다.



다.

6.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7. (생략)

8.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 기기에 의한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관내의 영상정보처리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생략)

② 개인영상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

--.

6. -----  
-----  
-----  
-----  
않는 -----.

7. (현행과 같음)

8. -----  
-----  
-----  
-----  
----- 비  
슷한 -----.

제3조(적용대상) ----- 법 제25조제1항 -----  
-----  
-----  
-----  
-----.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⑦ (생략)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  
내의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한 효  
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의  
구청장, 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  
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신설>

--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  
--- 영상정보처리기에 ---  
-----  
-----  
-----  
-----.

제10조(통합관제센터)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  
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  
리기기의 연계·통합 및 실시  
간 영상 관제
2. 유관 기관과의 합동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효율적인 도시 관리  
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지능화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

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신속한 대응 및 비상대응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CCTV의 임의조작 방지, 영상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처리기기나 그 밖의 장비의 연계를 위한 표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